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월 20만원 12개월 동안

※ 자격요건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 소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최장 12개월)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

지원요건

요건 ①~⑤까지 모두 충족 시 심사 후 대상 선정

- 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 신청
- ② 신청인(채권자)명의로 양육비 집행권원 보유
- ③ 과거 긴급복지지원 수급자였으나, 생계가 지속적으로 어려우신 분(증빙 필요)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보유(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통한 소득 증빙)
- ⑤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분

※ 세부요건 및 지급중단 사유는 뒷면 참고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원기간

9개월(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 | 02-3479-5514



지급요건 (다음은 모두 충족해야 함)

- 1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법률지원 등을 먼저 또는 동시에 신청하였을 것
-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에 양육비 채권자로 명시되어 있을 것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경우
- 5 다음 1~4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3.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4. 양육비 채권자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지급중지요건

- 모든 지급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을 받는 중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을 중지함

-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되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 2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단,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일부만 이행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그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가 개시된 경우
-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이 개시된 경우
-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이 종결된 경우(취하, 취하간주, 기각, 중단, 완납, 사망 등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

지급절차

양육비채권자 지원신청 ▶ 서류검토 및 지급요건 확인 ▶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1. 지급결정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 2. 부지급결정 ▶ 업무종결

※ 구상권 행사 개요

- 대상 : 양육비채무이행자력이 있는 양육비 채무자
- 시기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종료 후
- 금액 :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이자 제외)